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- 37 호

『벤처기업 확인요령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월 26일

중소기업청장

벤처기업 확인요령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□ 국민경제 자문회의('14.12) 건의 사항* 및 규제기요턴 회의('14.12) 과제** 추진

*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벤처지원 대상 업종 포함

**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벤처지원 대상 업종 포함

○ 해외벤처캐피탈 투자의 벤처확인 투자로 인정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('14.12)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등

2. 관련근거

○ 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및 동 법 시행령

3. 주요내용

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확대(안 별표1)

- 벤처기업 지원업종에 음식점업(13개 세세업종),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,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(8개 세세업종) 등 22개 업종 추가

* 벤처지원 제외업종 : 현행(45개) → 개선(23개)